

제23회 목포시의회 회의록

1. 일 시 : 단기4286(1953)년 10월 2일 오전 10시 45분

2. 장 소 : 의회 의사당

3. 개회성립 :

1) 참석의원:17명

유정두, 이소규, 김삼성, 임일남, 김남진, 이재홍, 김팔용, 박찬규, 김영완,
김자홍,

이문길, 정응표, 이복주, 김경희, 명남철, 김길환, 김경현 의원

2) 불참의원:4명

문택호, 김채용, 진복춘, 오세일 의원

4. 의사일정 :

5. 보고사항 :

1) 제22회 회의록 통과

2) 내무위원회 회의상황 보고

3) 문교사회위원회 회의상황 보고

4) 시공관 진상조사 보고의 건(조사위원측)

5) 일선장병 환영상황 보고의 건

6. 부의안건 :

1)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의 건

2) 단기4286(1953)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심의의 건

7. 개회선언

의장 유 정 두

(오전 10시 45분)

1) 개회식(식순 생략)

8. 토의안건 :

◇서기 박 찬 대

- 제22회 회의록 낭독

◇의장 유 정 두

- 낭독하는 회의록에 이의없으면 통과하겠음. 전원 통과

◇박 찬 규 의원

- 내무위원회 회의 상황 보고가 별지와 여히 있었음

◇김 영 완 의원

- 중대한 문제를 심의하는데 참석치도 못하여서 미안하나 지금 본다면 건설과 주관임에도 불구하고 건설과장 이하로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으며, 후면의 이유서를 본다면 계획성 없는 이유서임에 구체적인 통계 숫자를 보고 하여 주십시오.

◇의장 유 정 두

- 본 조례안의 개정 골자는 종전에 비하여 영업용, 가정용, 일반영업용 보다도 종광제로 한다는 것과 수도료 인상은 전반적으로 4할 정도가 인상되었으며, 현재로 보아서는 증설을 한다 하더라도 죽교동, 산정동 등은 저수기 관계로 물이 나오지 않을 형편이니까 청계천의 수원지가 완전히 됐을 때 증설도 가능할 것이므로 요금 인상만은 승인을 하고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를 하여서 심의한 것이다.

※ 의원과 집행부간의 질의응답 약 5분간 계속 (내용은 생략)

◎ 상이군인회 목포시 지부에서 제출된 건의문의 건

◇의장 유 정 두

- 문교사회위원회의 회의상황 보고를 바랍

◇김 경 희 의원

- 5월 25일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된 본 건에 대하여서는 정식으로 포기의 의사 표시로써 폐안되었음

◎ 일선 장병 환영 상황 보고의 건

◇서기 박 찬 대

- 경과 보고가 있었음

(요지 : 시의원 3회분 변상금으로써 재향군인회에 일임하여 환송하도록)

◇이 재 흥 의원

- 수도조례 개정이 됨으로써 경정 예산안을 세울 것으로 2, 3독회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긴급동의

- 재청, 3청, 4청, 5청까지 있었음.

◇김 남 진 의원

- 행정부의 답변이 확실치 못하므로 그대로 통과 못하고 토론을 계속할 것을 개의 (재청이 없으므로 폐안됨)

◇이 복 주 의원

- 죽교동 등지의 수도급수 사정을 본다면 하루에 4, 5지게 정도의 물이 나고 있으므로 수도료 인상은 좋으나 행정부에서 책임있는 일을 하여주시기를 바랍

◇김 삼 성 의원

- 수도는 고장 또는 방수하는 예가 각 가정에 많이 있는데 내일부터라도 시청 직원 파견하여 고장 등을 조사하여 급속히 수리할 것을 조건부로 하기 바랍

◇정 응 표 의원

- 남전 앞에 수도 공사를 하였는데 도로를 뚫어 놓고 그대로 두는 사실이

있는데 그 도로를 원상 복구를 할 것인가? 시장님의 답변을 요함

◇시장 하 동현

- 곧 원상 복구 하겠음

◇정 응 표 의원

- 한밭이 계속되고 있는데 급수사정은 어떠한가?

◇시장 하 동 현

- 지금부터 내년 3월까지 비가 안 와도 급수에는 이상 없다.

◇의장 유 정 두

- 동의안의 가부를 묻겠음. 전원 가결

◎ 단기4286(1953)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심의의 건

◇김 영 완 의원

- 잠부금 문제로 중앙으로부터 상당한 지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등등의 의견을 각 주무과장과 질의응답할 것을 긴급동의

◇의장 유 정 두

- 동의안의 가부를 묻겠음. 재석의원 17명 중 4표로 부결
(이 문제는 마지막에 하기로 하자)

※ 교육위원회 특별 세입세출 경정예산의 건에 관하여 질의응답 약 5분간 계속

(내용은 생략)

◇이 재 흥 의원

- 본 경정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재청, 3청)

◇의장 유 정 두

- 가부를 묻겠음. 전원 가결

◎ 시 흥행장 진상조사 보고의 건(조사위원측)

◇김 남 진 의원

- 별지와 여히 조사서 지참 보고하였음

※ 의원간의 토론이 약 10분간 계속 (내용생략)

◇김 삼 성 의원

- 집행부에서 의원과 총무과장이 재조사하여서 의원이 조사한 것과 부합된다면 추진할 것을 동의 (재청이 없음)

◇임 일 남 의원

- 본 건은 수개월이 경과한 것이오니 실지 재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자 동의하다.

- 재청, 3청이 있었음.

◇이 복 주 의원

- 행정부에다 일임하자 개의

◇임 일 남 의원

- 조사 위원을 의장이 지명하되 조사결과 의원의 조사에 부합하면 조사 위원에 일임하기로 하자

◇의장 유 정 두

- 오세일, 명남철, 조운용 총무과장, 박찬규, 유정두를 지명

※ 동의안은 시공관을 구입하자는 것

※ 개정안은 시공관을 구입치 말자는 것

◇의장 유 정 두

- 무기명 투표로써 가부를 결정하겠음
- 감표 위원은 임일남, 이복주 의원을 지명

※ 동의안은 同

※ 개정안은 改

동 의 안	개 정 안	기 권	계	비 고
11표	5표	1표		
계11표	5표	1표	17표	

◇의장 유 정 두

- 동의안이 11표로써 가결

◇김 자 흥 의원

- 지방자치법 제20조, 동 142조, 동 시행령 15조에 의하여 본청 각 사업장, 각 동 전반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 3청이 있었음.

◇의장 유 정 두

- 가부를 묻겠음. 재석의원 17명 전원 가결
- 회의록 서명에 박찬규, 김영완 의원을 지명

- 산회선언

(오후 1시 45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에 서명 날인함

단기4286(1953)년 10월 2일

의장 : 유 정 두

의원 : 박 찬 규

” : 김 영 완

작성자 서기 양 판 남